

E- 2 : 건설안전교육사례

1. 관계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에 의거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 채용시, 작업내용 변경시 및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

2. 안전·보건교육의 종류

1) 교육의 종류/대상/시간/시기

교육의 종류	교육 대상	교육시간	교육시기
정기교육	일반 근로자	2시간 이상	매 월
	관리 감독자	8시간 이상 16시간 이상	반 기 년 간
채용시 교육	신규 채용자	1시간 이상	작업시작전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작업변경 담당 근로자	1시간 이상	작업시작전
특별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영별표2의 각호에 종사하는 근로자	2시간 이상	작업시작전

2) 교육종류별 교육내용

교육의 종류	교육 내용
정기 교육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보호구/안전장치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 안전사고 사례 및 산업재해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근로자 건강증진 및 산업간호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 표지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교육의 종류	교육 내용
정기교육 (관리감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 작업안전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근로자 건강증진 및 산업간호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신규채용시 및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 법령에 관한 사항 · 당해 설비/기계/기구의 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근로자 건강증진 및 산업간호에 관한 사항 · 물질 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특별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 시행규칙 별표8의2 라(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작업별 교육내용)에서 정하는 교육

※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작업별 교육내용(건설업 대상)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작업별 교육내용

작업명	교육 내용
공통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 당해설비/기계/기구의 작업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근로자 건강증진 및 산업간호에 관한 사항 ○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작업명	교육내용
<p><개별내용></p> <p>1. 폭발성/발화성/인화성 물질의 제조/취급작업 (시험연구를 위한 취급작업을 제외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발성/발화성/인화성 물질의 성상이나 성질에 관한 사항 ○ 폭발한계/발화점/인화점 등에 관한 사항 ○ 취급방법 및 안전수칙에 관한 사항 ○ 이상발견시의 응급처치/대피요령에 관한 사항 ○ 화기/정전기/충격/자연발화 등의 위험방지에 관한 사항 ○ 작업순서/취급주의사항/방호거리등에 관한 사항 ○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p>2. 목재가공용기계(동근톱기계/띠톱기계/대패기계/모떼기기계/루타에 한하며 휴대용을 제외한다)를 5대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당해 기계에 의한 작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재가공용 기계의 특성/위험성에 관한 사항 ○ 방호장치 종류/구조/취급에 관한 사항 ○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안전작업방법/목재취급에 관한 사항 ○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p>3. 운반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당해기계에 의한 작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반하역기계/부속설비의 점검에 관한 사항 ○ 작업순서/방법에 관한 사항 ○ 안전운전방법에 관한 사항 ○ 작업신호 화물의 취급에 관한 사항 ○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작업명	교육내용
4.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1톤이하의 크레인/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당해 기계에 의한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호장치의 종류/기능/취급에 관한 사항 ○ 걸고리/와이어로프/비상정지장치 등의 기계/기구 점검에 관한 사항 ○ 화물의 취급/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작업신호/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5. 건설용 리프트/곤도라를 이용한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호장치 기능/사용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달기체인/와이어 등의 점검에 관한 사항 ○ 화물 권상/권하작업방법/안전작업지도에 관한사항 ○ 기계/기구에 특성/동작원리에 관한 사항 ○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6.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행하는 파쇄 작업(2미터이상인 구축물의 파쇄작업에 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크리트 해체요령/방호거리에 관한 사항 ○ 작업안전조치/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파쇄기의 조작/공동작업 신호에 관한 사항 ○ 보호구/방호가드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7.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굴착 (터널 및 수직갱외의 갱굴착을 제외한다)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반의 형태구조/굴착요령에 관한 사항 ○ 지반의 붕괴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붕괴방지용 구조물 설치/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종류/사용에 관한 사항 ○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작업명	교육내용
8.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행하는 파쇄작업 (2미터이상인 구축물의 파쇄작업에 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크리트 해체요령/방호거리에 관한 사항 ○ 작업안전조치/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파쇄기의 조작/공통작업 신호에 관한 사항 ○ 보호구/방호가드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9.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굴착 (터널 및 수직갱외의 갱굴착을 제외한다)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반의 형태구조/굴착요령에 관한 사항 ○ 지반의 붕괴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붕괴방지용 구조물 설치/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종류/사용에 관한 사항 ○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0.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의 설치 또는 해체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안전점검 요령/방법에 관한 사항 ○ 동바리 운반/취급/설치시 안전작업에 관한 사항 ○ 해체작업순서/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취급/사용에 관한 사항 ○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1. 터널안에서의 굴착작업 (굴착용 기계를 굴착작업중 근로자가 칼날밑에 접근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작업을 제외한다)/ 동작업에 있어서의 터널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콘크리트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환경의 점검요령/방법에 관한 사항 ○ 붕괴방지용 구조물설치/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재료의 운반 취급설치의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보호구의 종류/사용에 관한 사항 ○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작업명	교육내용
<p>12.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작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발물 취급요령/대피요령에 관한 사항 ○ 안전거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방호물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작업신호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p>13. 거푸짚 지보공의 조립/해체작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보공의 조립방법/작업절차에 관한 사항 ○ 조립재료의 취급방법/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조립해체시의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점검에 관한 사항 ○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p>14. 비계의 조립/해체/변경작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계의 조립순서 방법에 관한 사항 ○ 비계작업의 재료취급/설치에 관한 사항 ○ 추락재해방지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p>15. 건축물의 골조/교량의 상부구조/탑의 금속제의 부재에 의하여 구성되는것(5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의 조립/해체/변경작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립/버팀대의 설치순서에 관한 사항 ○ 조립해체시의 추락재해/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 건립용 기계의 조작/작업신호에 관한 사항 ○ 안전장구 착용 및 해체순서에 관한 사항 ○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작업명	교육내용
16. 건축물의 골조/교량의 상부구조/탑의 금속제의 부재에 의하여 구성되는 것 (5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의 조립/해체/변경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립/버팀대의 설치순서에 관한 사항 ○ 조립해체시의 추락재해/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 건립용 기계의 조작/작업신호에 관한 사항 ○ 안전장구 착용 및 해체순서에 관한 사항 ○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7. 처마높이가 5미터이상인 목조건축물의 구조부재의 조립이나 건축물의 지붕/외벽밑에서의 설치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붕괴/추락/재해방지에 관한 사항 ○ 부재의 강도/재질/특성에 관한 사항 ○ 조립설치 순서/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작업점검에 관한 사항 ○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0. 콘크리트공작물(그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의 해체/파괴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크리트 해체기계의 점검에 관한 사항 ○ 파괴시의 안전거리/대피요령에 관한 사항 ○ 작업방법/순서/신호요령에 관한 사항 ○ 해체/파괴시의 작업안전기준/보호구에 관한 사항 ○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4. 맨홀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비/설비/시설등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산소농도측정/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작업내용별/안전작업방법/절차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보호장치/사용에 관한 사항 ○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5. 산소결핍장소에 있어서의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소농도측정/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사고시의 응급처치/비상시 구출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 산소결핍작업의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 교육 실시자

노동부 장관이 인가한 지정교육기관(한국산업안전공단/대한산업안전협회/
건설안전기술협회 등)/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관리감독자/당해분
야 강사요원 교육과정 이수자